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2237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미합중국인 A

2. 미합중국인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이완수, 박화정, 이진선, 김경수, 진동열, 박병

훈, 장선, 이성민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E 사이에 2020. 4.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다. 피고 D은 피고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3. 접수 제4482호 및 제448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0638 금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4. ‘E은 원고 A에게 1억 2,0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6,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E이 부산고등법원 2020나5349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E은 원고 A에게 95,699,210원, 원고 B에게 127,598,9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E이 대법원 2021다22131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6. 3. E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나. E과 피고 C는 2014. 10. 8. F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대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E은 이 사건 토지 중 221/39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175/39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E은 2020. 4. 21.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라 한다).

다. 피고 C는 2021. 1. 13. 피고 D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의 각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채무자가 E인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채무자가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이 사건 제3 처분행위’라 한다).

라.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당시 E은 이 사건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20. 6. 16. 기준 가액은 9억 5,18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제1 처분 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원인 2018. 7. 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이라 한다) 및 ‘등기원인 2020. 1. 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억 6,000만 원,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2022. 5. 2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이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이전에 변제 내지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툼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채권자인 원고들이 채무자인 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 및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합계 4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C 및 전득자인 피고 D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나.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E과 피고 C가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합계 4억 6,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20. 6. 16. 기준 가액은 9억 5,180만 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당시에도 동일한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피고 C가 E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당시 E의 소유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529,843,324원(9억 5,180만 원×221/397 지분, 원 미만 버림)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은 4억 6,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이 그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원인 2020. 6. 2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조합'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을 포함하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6억 6,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나 어떤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C는 E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 전득자인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3. 접수 제4482호 및 제448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의 요지

1) 피고 C의 항변 요지

가) 피고 C는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당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주식회사 I와 피고 C는 2017. 5. 1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접도요건이 못하였다고 하여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

위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E은 건축설계비,

소송비용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위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으므로 접도요건을 갖추어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용이하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2020. 3. 주식회사 I의 대표자를 피고 C로 변경하고, 피고 C와 E이 나누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피고 C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E의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결국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고, 그 개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E과 피고 C의 채권자에 대한 담보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믿고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C에게 원고들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E의 항변 요지

E은 자신의 형인 D으로부터 2021. 9. 21. 3,000만 원, 2014. 12. 26. 5,000만 원, 2019. 7. 31. 2억 원을 차용한 적이 있다. 그리고 피고 C는 2021. 1. 11. 피고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 사건 제2, 3 각 처분행위 당시 E의 피고 D에 대한 채무 1억 8,000만 원, 피고 C에 대한 피고 D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3 각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제1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C의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36333

판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피고 C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C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D의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피고 D의 주장만으로는 전득자인 피고 D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경호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부산 해운대구

대 397㎡

중 공유자 지분 397분의 221(갑구 순위번호 7번)

(끝).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